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6040 판결 [임차권 확인]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화영

피고1. B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마준석

변론 종결2020. 4. 23.

판결 선고2020. 6.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6.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원주시 D 20,978m², E 792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권자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임대차계약은 사업 대상 목적물(사용권에 한한다)의 제공자인 피고들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피고들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임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사용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2. 임대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3. 사업(임대)기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준공일(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사업개시신고일"을 말한다)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임대인은 위 임차기간 동안 위 2항의 필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에 동의한다.
4.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구역, 사업내용, 시설규모는 인허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 ① 임대료: 일금 175,000,000원(본 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피고들은 원고가 총 임대료 175,000,000원 중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근저당 해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해당 임대부지의 근저당 설정 은행에 우선 지급하여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을 동의한다.
- ③ 원고는 임대료 175,000,000원 중 근저당 해지를 위해 지급한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을 상업중전개시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 나. 위 D 임야 20,978㎡는 2018. 5. 9. D 임야 7,502㎡, F 임야 7,904㎡, G 임야 5,572㎡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를 특정할 때는 각 필지의 번지만을 기재하기로 하되, 분할 전 D를 '분할 전 D'로, 분할 후 D를 '분할 후 D'로 표기한다).
- 다. 피고들은 2018. 5. 4. 분할 후 D 및 E의 각 소유 지분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15일 H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후 H은 원고에게 위 각 매수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 라. 피고들은 2018. 5.경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주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제출 받는 데에 협조하지 않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 1)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등 제반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로부터 사용동의서를 제출 받는 데에 협조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H에 분할 후 D 및 E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매도된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2) 나아가 갑 제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2. 8. 원주시장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주시 관련 부서 등의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통보받아 지속적으로 보완을 위해 노력한 사실, 원고는 2018. 6. 5.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관련 법 검토 의견을 반영한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 받아 위 자료를 준비하던 중 2018. 9. 3.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보완사항에 더하여 D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원고는 심의자료 준비를 마친 사실, 원주시장은 2018. 11. 12. 원고에게 D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와 심의자료 제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에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주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발전소 건설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므로 2017. 12.경에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이 이를 항의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매입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J,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 등과 피고들의 모친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측이 피고 측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임대료를 지급할 것인데 2017. 12.경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증인 I은 '예상되는 허가기간에 따른 날짜가 2017. 12.경이기는 하나, 실제 개발행위허가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도 함께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시기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7. 12.경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근저당권 설정 은행에 우선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업중전개시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경까지 피고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항의하는 피고 측에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 계약금 234,000,000원, ② 측량 인허가 설계용역계약 계약금 27,500,000원, ③ I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5,000,000원, ④ 지질조사비용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내용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이익의 범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개별 손해배상 항목에 관한 판단

1)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의 계약금 234,000,000원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M주식회사와 도급금액을 2,340,000,000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34,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고, M주식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 중단 외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위 계약상 M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의무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관업무 및 공사 관련 업무로서 전기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전기사용전검사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M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M주식회사에 계약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나, M주식회사에 미지급 계약금 채무를 부담하고, M주식회사는 나머지 계약금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 제44호증, 제4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7. 15. M주식회사와 사이에 M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관업무 및 공사 관련 업무로서 전기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및 전기사용전검사 등을 수행하고, 원고가 그 대금으로 2,3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234,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고, M주식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 중단 외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7. 7. 20. M주식회사에 계약금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M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전기사업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M주식회사가 2019. 12.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224,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원고가 M주식회사에 지급한 10,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라 M주식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허가 등의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업무이고, 적어도 원고가 M주식회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은 위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피고들은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인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원고가 M주식회사에 부담한다는 224,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약에 따른 M주식회사의 업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와 그를 위한 대관업무 및 관련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각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상 주된 업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고, 그 외 대관업무 및 공사 관련 업무로서 전기사업허가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는 준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M주식회사는 건설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의 주된 업무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M주식회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관하여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지급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 계약에 따른 정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M주식회사 사이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M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독촉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장 제출 당시 계약금 전액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의 M주식회사 명의의 계약금 입금 영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M주식회사에 대한 224,000,000원의 미지급 계약금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계약상 주된 채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고, 이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한 것인데,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계약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들에 대한 임대료 지급 시기도 개발행위허가 이후로 정하였음에도,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통상 예상되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 부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측량인허가 설계용역계약 계약금 27,500,000원 갑 제6, 21,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4. N(상호: O)과 사이에 N이 태양광발전 부지조성(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협의, 도시계획심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60,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 부지조성 측량인허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7. 20. N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2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N은 위 계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내용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인 위 계약금 2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I에게 지급한 비용 5,000,000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 지질 및 지반 조사 작업 등을 의뢰하면서, I에게 위 각 작업 수행을 위한 현장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이 수행한 업무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피고들은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인 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비용 2,000,000원 갑 제8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P에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반조사를 의뢰하고, 2018. 4. 1. 400,000원, 2018. 4. 16. 1,6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P이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지반조서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반조사보고서의 작성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피고들은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인 위 2,000,000원(= 2018. 4. 1. 400,000원 + 2018. 4. 16. 1,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이행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지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5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2019. 2. 25.자 및 2020. 1. 10.자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5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주시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28건 이루어졌고, 그중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4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위 4건의 허가 중 3건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주시장의 보완사항 즉,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심의자료 제출을 제외하고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관련 법 등에 위반되었다거나 조건이 미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 측이 작성한 사업수지분석에 의하면 매년 2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계약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앞서 본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10,000,000원 + 27,5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그 이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8.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을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교식

판사공민아

판사정지원